

#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8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2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」는 서울역 주변 무료급식 단체의 실내 급식 시행 및 노숙인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10년 설치한 무료급식장으로 노숙인 무료급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일부 조리 등을 시행하여 노숙인의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서,
- 나.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재위탁을 통해 노숙인들의 무료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(개소일자 : '10. 4. 9.)
- 위치 : 용산구 한강대로 377
- 규모 : 연면적 599.5㎡(지상1층/4층)
  - 급식장 401.5㎡(급식실, 조리실, 세척실, 사무실 등), 급식대기소 198㎡
- 수탁기관 : (사복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(대표 : 이철)
- 운영인력 : 시설장 포함 4명
- '22년 예산 : 308,744천원(민간위탁금)

## 나. 위탁개요

○ 위탁기간 : '22. 4. 9. ~ '25. 4. 8.(3년)

※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위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위탁업무

- 민간급식단체의 '실내급식장'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
- '실내급식장'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
-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| 구분 | 수탁기간                  | 수탁자             | 수탁자 선정방법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1차 | '10.04.09.~'13.04.08. | (사)서울노숙인시설협회    | 지정 위탁    |      |
| 2차 | '13.04.09.~'16.04.08. |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| 재위탁      | 공개모집 |
| 3차 | '16.04.09.~'19.04.08. |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| 재계약      |      |
| 4차 | '19.04.09.~'22.04.08. |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| 재위탁      | 공개모집 |

※ 2차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시행(제242회 정례회, '12. 11. 23.)

## 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무료급식장을 이용하는 민간 급식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양질의 노숙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, 노숙인 무료급식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- 현 수탁기관의 따스한채움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,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
**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활지원과-10606, 21. 9. 2.)
-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 10. 6.) : 적격

※ 작성자 :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신준열 (☎2133-7593)